

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(제91조제1항 관련)

1. 공통사항

- 가. 기술인력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
- 나.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·시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- 다.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- 라.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·장비의 관리·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되, 그 품질관리규정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애스 큐 아이에스오(KS Q ISO)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

2. 종합 분야

가. 기술인력

- 1)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
- 2)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, 화공기사 1명 이상
- 3)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

나. 시험실: 200m² 이상

다. 시험장비

- 1) 압축·인장·휨 시험장비: 만능시험기(용량 5톤), 만능시험기(용량 100톤 이상)
- 2) 골재 시험장비: 항온항습장치, 건조로, 천칭, 체가름시험기, 마모시험기, 모래당량 시험용기구, 단위중량 시험용기구, 안정성 시험용기구,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, 비중 시험용기구,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
- 3) 토질조사 장비: 보링기계, 오거보링기계, 정적 콘 관입시험기, 동적 콘 관입시험기, 앵커인발시험기
- 4) 토질 시험장비: 건조로, 천칭, 체가름시험기, 항온수조, 액성한계시험기, 소성한계시험기, 수축한계시험기, 비중 시험용기구, 자동다짐기, 실내CBR 시험기, 현장CBR시험기, 현장밀도시험기, 평판재하시험기, 투수시험기, 압밀시험기, 전단시험기, 일축압축시험기, 삼축압축시험기
- 5) 시멘트 시험장비: 모르타르혼합기, 항온수조, 전기로, 화학천칭(감도

0.1mg 및 0.01g), 분말도시험기,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, 응결시간측정기, 플로테이블, 주도시험기

6) 콘크리트 시험장비: 슬럼프 시험용기구, 공기량시험기, 블리딩시험기, 동결융해시험기, 동탄성계수측정기, 씻기분석 시험용기구, 믹서, 코어채취기, 컨시스턴시시험기

7) 아스팔트 시험장비: 신도시험기, 침입도시험기, 휴롤점도계, 박막가열오븐, 항온수조, 인화점시험기

8) 아스팔트콘크리트 시험장비: 마찰안정도시험기, 항온수조, 밀도 시험용기구, 아스팔트함량시험기, 코어채취기, 평탄성시험기, 미끄럼저항시험기, 피막박리시험기, 자동다짐기, 믹서

9) 환경 시험장비: 열전도율시험기, 양생수조, 함수율측정기

10) 그 밖의 장비: 이동시험차,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

라. 특수 분야의 시험·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 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.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등록기준 중 종합 분야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출 것으로 본다.

3. 토목 분야

가. 기술인력

(1)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

(2)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

(3)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

나. 시험실: 150m² 이상

다. 시험장비

1) 압축·인장·휨 시험장비: 만능시험기(용량 5톤), 만능시험기(용량 100톤 이상)

2) 골재 시험장비: 항온항습장치, 건조로, 천칭, 체가름시험기, 마모시험기, 모래당량 시험용기구, 단위중량 시험용기구, 안정성 시험용기구,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, 비중 시험용기구,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

3) 토질조사 장비: 보링기계, 오거보링기계, 정적 콘 관입시험기, 동적 콘 관입시험기

4) 토질 시험장비: 건조로, 천칭, 체가름시험기, 항온수조, 액성한계시험기, 소성한계시험기, 수축한계시험기, 비중 시험용기구, 자동다짐기, 실내CBR 시험기, 현장CBR시험기, 현장밀도시험기, 평판재하시험기, 투수시험기, 압밀시험기, 전단시험기, 일축압축시험기, 삼축압축시험기

5) 시멘트 시험장비: 모르타르혼합기, 항온수조, 전기로, 화학천칭(감도 0.1mg 및 0.01g), 분말도시험기,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, 응결시간측정기, 플로테이블, 주도시험기

- 6) 콘크리트 시험장비: 슬럼프 시험용기구, 공기량시험기, 블리딩시험기, 썰기분석 시험용기구, 믹서, 코어채취기, 컨시스턴시시험기
 - 7) 아스팔트 시험장비: 신도시험기, 침입도시험기, 휴롤점도계, 박막가열오븐, 항온수조, 인화점시험기
 - 8) 아스팔트콘크리트 시험장비: 마찰안정도시험기, 항온수조, 밀도 시험용기구, 아스팔트함량시험기, 코어채취기, 평탄성시험기, 미끄럼저항시험기, 피막박리시험기, 자동다짐기, 믹서
 - 9) 그 밖의 장비: 이동시험차,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
- 라. 특수 분야의 시험·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 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.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등록기준 중 토목 분야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4. 건축 분야

가. 기술인력

- 1)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
- 2)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
- 3)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

나. 시험실: 150m² 이상

다. 시험장비

- 1) 압축·인장·휨 시험장비: 만능시험기(용량 5톤), 만능시험기(용량 100톤 이상)
 - 2) 골재 시험장비: 항온항습장치, 건조로, 천칭, 체가름시험기, 마모시험기, 모래당량 시험용기구, 단위중량 시험용기구, 안정성 시험용기구,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, 비중 시험용기구,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
 - 3) 토질조사 장비 및 토질 시험장비: 평판재하시험기, 현장CBR시험기, 앵커인발 시험기
 - 4) 시멘트 시험장비: 모르타르혼합기, 항온수조, 전기로, 화학천칭(감도 0.1mg 및 0.01g), 분말도시험기,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, 응결시간측정기, 플로테이블, 주도시험기
 - 5) 콘크리트 시험장비: 슬럼프 시험용기구, 공기량시험기, 블리딩시험기, 컨시스턴시시험기, 썰기분석 시험용기구, 믹서, 코어채취기
 - 6) 환경 시험장비: 열전도율시험기, 양생수조, 함수율측정기
 - 7) 그 밖의 장비: 이동시험차,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
- 라. 특수 분야의 시험·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 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.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등록기준 중 건축 분야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5. 특수 분야

가. 골재

- 1) 기술인력: 토목품질시험기술사·건축품질시험기술사·건설재료시험기사·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,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·토목산업기사·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
- 2) 시험실: 100m² 이상
- 3) 시험장비: 항온항습장치, 건조로, 천칭, 체가름시험기, 마모시험기, 모래당량 시험용기구, 단위중량 시험용기구, 안정성 시험용기구,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, 비중 시험용기구,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, 씻기분석 시험용기구

나. 레디믹스트콘크리트

- 1) 기술인력: 토목품질시험기술사·건축품질시험기술사·건설재료시험기사·토목기사·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,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·토목산업기사·건축산업기사·콘크리트산업기사·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
- 2) 시험실: 100m² 이상
- 3) 시험장비: 슬럼프 시험용기구, 천칭, 체가름시험기, 마모시험기, 모래당량 시험용기구, 단위중량 시험용기구, 안정성 시험용기구,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, 비중 시험용기구,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, 씻기분석 시험용기구, 공기량시험기, 압축시험기(100톤 이상)

다. 아스팔트콘크리트

- 1) 기술인력: 토목품질시험기술사·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,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·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
- 2) 시험실: 100m² 이상
- 3) 시험장비: 마샬안정도시험기, 믹서, 침입도시험기, 항온수조, 아스팔트 함량시험기, 천칭, 코어채취기, 피막박리시험기, 자동다짐기, 체가름시험기, 밀도 시험용기구, 신도시험기, 휴롤점도계, 박막가열오븐, 인화점시험기

라. 철강재

- 1) 기술인력: 토목품질시험기술사·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,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
- 2) 시험실: 100m² 이상
- 3) 시험장비: 만능시험기(용량 100톤 이상),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,

천칭, 두께측정기

마. 섬유

- 1) 기술인력: 토목품질시험기술사·건축품질시험기술사·건설재료시험기사
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,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·섬유물리산업기사
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
- 2) 시험실: 100m² 이상
- 3) 시험장비: 광학현미경, 진탕기, 두께측정기, 중량측정기, 만능시험기(용
량 5톤), 수직투수시험기, 수평투수시험기, 유효구멍측정기, 내후성시험기,
항균방미 시험장치, 항온수조, 마모시험기, 파열강도시험기, 구멍막힘시험
기(크로킹시험기)

바. 용접(방사선비파괴검사, 초음파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
검사)

- 1) 공통사항
가) 시험실: 100m² 이상
나) 시험장비: 캠브리지게이지, 필렛용접게이지
- 2) 방사선비파괴검사
가) 기술인력: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, 방
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
나) 시험장비: 엑스선발생장치, 감마선조사기
- 3) 초음파비파괴검사
가) 기술인력: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,
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
나) 시험장비: 초음파탐상장치
- 4) 자기비파괴검사
가) 기술인력: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, 자
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
나) 시험장비: 자분탐상장비
- 5) 침투비파괴검사
가) 기술인력: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, 침
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
나) 시험장비: 침투탐상검사약품

사. 말뚝재하(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)

- 1) 공통사항
가) 시험실: 50m² 이상
나) 기술인력: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,

건설재료시험기사 ·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
명 이상

2) 정재하시험: 정재하시험기(용량 500톤 이상)

3) 동재하시험: 동재하시험기